



Page	수정 전	수정 후
p.12	<p><b>04번 해설</b>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보건진료원</b>으로서 하는 보건활동</li> <li>2. <b>모자보건요원</b>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li> <li>3. <b>결핵관리요원</b>으로서 하는 보건활동</li> <li>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li> </ol>	<p><b>04번 해설</b>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b>으로서 하는 보건활동</li> <li>2. <b>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b>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li> <li>3. <b>결핵예방법에 따른</b> 보건활동</li> <li>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li> </ol>
p.14	<p><b>07번 해설</b> 제3조(의료기관)</p> <p>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면 1), 2), 3), 4)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며 5)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p>	<p><b>07번 해설</b> 제3조(의료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li> <li>2. 조산원</li> <li>3. 병원급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 종합병원</li> </ol>
p.17	<p><b>제3조의3 종합병원</b></p> <p>④ 추가진료과목 : 필요시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가능 이 경우, 추가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 둘 수 있음</p>	<p><b>제3조의3 종합병원</b></p> <p>④ 추가진료과목 : 필요시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b>가능하며</b> 이 경우, 추가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 둘 수 있음</p>
p.18	<p><b>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요건</b></p> <p>③ 지정요건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p>	<p><b>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요건</b></p> <p>③ 지정요건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b>전문의를 둘 것</b></p>
p.22	<p><b>19번 보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시험관리 능력이 있고 정부가 설립 및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li> <li>3) 국가시험 등에 관한 전문적인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li> </ol>	<p><b>19번 보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한다</li> <li>3)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시험장소를 공고할 수 있다</li> </ol>
p.24	<p><b>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 시행·공고</b></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게 시행하도록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li> <li>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li> </ol>	<p><b>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 시행·공고</b></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함</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6	26번 해설 제목 수정 제16조(세탁물 처리)	26번 해설 제목 수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27번 해설 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7번 해설 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p.27	제16조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불가	제16조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불가
p.31	제17조 기재사항 ② 병명	제17조 기재사항 ② 병명 및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질병 및 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제17조 병명 기재 방법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삭제
p.36	39~40번 해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39~40번 해설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pp.37~38	42~44번 해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	42~44번 해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
p.38	45번 해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	45번 해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

Page	수정 전	수정 후
	<p>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p> <p>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p>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p>	<p>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p>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p> <p>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p> <p>②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p>
p.41	<p><b>제21조 기록열람</b></p> <p>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p> <p>10.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p> <p>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음</p> <p>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p>	<p><b>제21조 기록열람</b></p> <p>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함</p> <p>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p> <p>10.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p> <p>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음</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음</p> <p>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p>	<p><del>⑤-삭제</del></p>
p.42	제21조 밑에 추가	<p>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p> <p>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음</p> <p>②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p>
p.54	<p>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p> <p>①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p>	<p>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p> <p>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li> <li>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li> <li>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p.55~57	<p>65~73번 해설</p> <p>제33조(개설)</p>	<p>65~73번 해설</p> <p>제33조(개설 등)</p>
p.56	<p>70번 해설</p> <p>마지막에 추가</p>	<p>70번 해설</p> <p>3) 제49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p> <p>4) 제37조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5)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65	<p>84번 해설</p> <p>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li> <li>2)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한다.</li> <li>3)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한다.</li> <li>4)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하였던 물품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다.</li> </ol>	<p>84번 해설</p> <p>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li> <li>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li> <li>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li> <li>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li> </ol> <p>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li> </ol>
p.66	<p>시행규칙 제33조</p> <p>시행규칙 제35조 밑에 추가</p>	<p>시행규칙 제33조 삭제</p> <p>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p> <p>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li> <li>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li> <li>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li> <li>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li> </ol> <p>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p> <p>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li> <li>2.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li> <li>3.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li> </ol> <p>시행규칙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p> <p>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함</p>

Page	수정 전	수정 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li> <li>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li> <li>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li> <li>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li> <li>5.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li> </ol>
p.69	<p>88~89번 해설 시행령 제18조(당직의료인)</p> <p>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p>	<p>88~89번 해설 시행규칙 제39조의5(당직의료인)</p> <p>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p> <p>②항 삭제</p>
p.72	<p>시행령 제18조</p> <p>①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p>	<p>시행규칙 제39조의5</p> <p>①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p>
p.75	<p>98, 100번 해설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p> <p>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98, 100번 해설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p> <p>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li> </ol>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p> <p>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p>
p.76	101번 해설 추가	<p>101번 해설</p> <p>시행규칙 제44조(위원회의 구성)</p> <p>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77	<p>규칙 제43조</p> <p>①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p>	<p>규칙 제43조</p> <p>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p> <p>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p> <p>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p>
p.79	<p>106~107 문제 해설</p> <p>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p> <p>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p>	<p>106~107 문제 해설</p> <p>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p> <p>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p> <p>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p>
p.80	<p>제56조 금지</p> <p>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p>	<p>제56조 금지</p> <p>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p>

Page	수정 전	수정 후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p.81	제56조 영 제23조 10. 추가	제56조 영 제23조 10.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제57조 영 제24조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 영 제24조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사, 조산원 의료광고의 심의
p.92	116번, 117번 해설 4. 삭제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16번, 117번 해설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18번 해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호(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118 번 해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p.96	제65조 면허 취소 가능사유 ③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65조 면허 취소 가능사유 ③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④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p.99	128번 문제 해설 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128번 문제 해설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1)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Page	수정 전	수정 후
	<p>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p> <p>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5)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로 구성된다.</p>	<p>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며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p> <p>3) 간호조무사는 자격 시험이다.</p> <p>4)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5)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실기로 구성된다.</p>
p.102	<p><b>제80조 간호조무사</b></p> <p>① 자격인정권자 : 시·도지사</p>	<p><b>제80조 간호조무사</b></p> <p>① 자격인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p>
p.103	<p><b>130번 해설</b> 제84조(청문)</p> <p>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3.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p>	<p><b>130번 해설</b> 제84조(청문)</p> <p>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p>
	<p><b>131번 해설</b> 제87조(벌칙)</p> <p>1), 2) 3),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131번 해설</b> 제87조(벌칙)</p> <p>1), 2) 3),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132번 해설</b> 제88조(벌칙)</p> <p>2),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132번 해설</b> 제88조(벌칙)</p> <p>2),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04	<p><b>133번 보기</b></p> <p>1)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p> <p><b>해설</b> 제88조의3(벌칙) 제20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사항)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133번 보기</b></p> <p>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p> <p><b>해설</b> 제88조의3(벌칙) 제20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사항)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105	제84조 청문 1. 설립 허가의 취소 2.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3.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4.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면허의 취소	제84조 청문 1. 인증의 취소 2. 설립 허가의 취소 3.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면허의 취소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삭제
pp.105~106	제8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㉓, ㉔ 항목 추가	제8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㉓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㉔ 업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p.106	제88조의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삭제
	제88조의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의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㉕ 추가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㉕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p.107	제9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㉖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	제9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㉖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Page	수정 전	수정 후
	<p>부 등”) 비치, 기록, 서명,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의료인</p> <p>㉒, ㉓ 추가</p>	<p>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아니한 의료인</p> <p>㉒ 자신의 의료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의 내용 확인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p> <p>㉓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p>
p.108	<p><b>제92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b></p> <p>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제37조제1항)</p> <p>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37조제2항)</p> <p>③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46조제3항)</p> <p>④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한 의료법인(제49조제3항)</p>	<p><b>제92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b></p> <p>①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제16조제3항)</p> <p>② 환자에게 수술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제24조의2제1항)</p> <p>③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참여한 의료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제24조의2제4항)</p> <p>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제37조제1항)</p> <p>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37조제2항)</p> <p>⑥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46조제3항)</p> <p>⑦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한 의료법인(제49조제3항)</p>
	<p><b>제92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b></p> <p>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제61조제1항)</p>	<p><b>제92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b></p> <p>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제21조의2제6항)</p> <p>②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장(제45조의2제2항)</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제92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p> <p>①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안마사 포함)(제33조제5항)</p> <p>②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마사 포함)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2항)</p> <p>③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2조제3항)</p> <p>④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제43조제5항)</p> <p>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4조제3항)</p>	<p>③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제61조제1항)</p> <p>제92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p> <p>①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제16조제3항)</p> <p>②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처리업자(제16조제4항)</p> <p>③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안마사 포함)(제33조제5항)</p> <p>④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마사 포함)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2항)</p> <p>⑤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2조제3항)</p> <p>⑥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제43조제5항)</p> <p>⑦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4조제3항)</p> <p>⑧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52조의2제6항)</p> <p>⑨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지 않아 그 위반행위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제4조제5항)</p>
	<p>제92조 과태료 부과·징수</p> <p>① 부과·징수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p>② 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가중하는 때에도 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음</p>	<p>제92조 과태료 부과·징수</p> <p>부과·징수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p.129	<p>제15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p> <p>②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p> <p>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p> <p>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p>	<p>제15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p> <p>②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p> <p>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p> <p>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p> <p>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p> <p>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p> <p>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의 종합·조정</p> <p>7.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p> <p>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p> <p>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147	<p>03번 해설</p> <p>제2조(정의)</p> <p>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b>영양개선 및 건강생활</b>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p> <p>4. 추가</p>	<p>03번 해설</p> <p>제2조(정의)</p> <p>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b>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b>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p> <p>4. <b>"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b></p>														
p.148	<p><b>제2조 정의 추가</b></p> <table border="1"> <tr> <td>국민건강증진사업</td> <td>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td> </tr> <tr> <td>⋮</td> <td>⋮</td> </tr> <tr> <td>영양개선</td> <td>개인 또는 ...</td> </tr> </table>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	영양개선	개인 또는 ...	<p><b>제2조 정의 추가</b></p> <table border="1"> <tr> <td>국민건강증진사업</td> <td>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b>건강관리</b>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td> </tr> <tr> <td>⋮</td> <td>⋮</td> </tr> <tr> <td>영양개선</td> <td>개인 또는 ...</td> </tr> <tr> <td><b>건강관리</b></td> <td><b>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b></td> </tr> </table>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b>건강관리</b>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	영양개선	개인 또는 ...	<b>건강관리</b>	<b>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b>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															
영양개선	개인 또는 ...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b>건강관리</b>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															
영양개선	개인 또는 ...															
<b>건강관리</b>	<b>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b>															
	<p><b>제5조 국민건강 증진정책 심의위원회</b></p> <p>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p> <p>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b>제5조 국민건강 증진정책 심의위원회</b></p> <p>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p> <p>5. <b>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b></p> <p>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149	<p>04번 해설</p> <p>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b>건강생활</b>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p>	<p>04번 해설</p> <p>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b>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b>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b>05번 해설</b> 제7조(광고의 금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b>05번 해설</b> 제7조(광고의 금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150	<p><b>07번 해설</b>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07번 해설</b>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08번 해설</b>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08번 해설</b>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51	<p><b>09번 해설</b>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p> <p>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p> <p>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p> <p>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p> <p>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p>	<p><b>09번 해설</b>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p> <p>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p> <p>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p> <p>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p>

Page	수정 전	수정 후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p.152	<b>13번 해설</b>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b>13번 해설</b>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p.158	<b>제9조의2 담배 경고문구 표시</b> ①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해야 함 1.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습관에 따라 다름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 물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div> 4.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경고문구 내용,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b>제9조의2 담배 경고문구 표시</b> ①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해야 함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사진(앞면과 뒷면에 한함) 2.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 물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div>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경고문구 내용,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161	<b>제25조 기금의 사용</b>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지도·훈련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b>제25조 기금의 사용</b>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훈련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Page	수정 전	수정 후
p.165	<p><b>03번 해설</b>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b>및 자질 향상</b>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03번 해설</b>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b>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b>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169	<p><b>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b>및 자질 향상</b>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b>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b>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170	<p><b>시행규칙 제2조</b> ③ 지방자치단체의 <b>생활권역</b>과 행정구역이 상이한데도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p>	<p><b>시행규칙 제2조</b> ③ 지방자치단체의 <b>생활권역</b>과 행정구역이 상이한데도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p>
p.172	<p>시행령 제7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공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p>	<p><b>삭제</b></p>
pp.173~174	<p><b>14번 15번 16번 해설</b>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라. 여성·노인·<b>장애인의</b> 건강유지·증진</p>	<p><b>14번 15번 16번 해설</b>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라. 여성·노인·<b>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b> 건강유지·증진</p>
p.174	<p><b>17번 해설</b> 시행규칙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제5조제1항 관련) <b>나.</b>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 (3)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발급 (4) 감염자관리명부 작성·관리</p>	<p><b>17번 해설</b> 시행규칙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제5조제1항 관련) <b>2)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b> <b>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검안사실 및 감염인 사망 등에 대한 신고 수리·보고</b> <b>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b> <b>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b> <b>라) 감염인의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 시설의 치료 및 영양 권고</b> <b>마)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발급</b> <b>바) 감염자관리명부 작성·관리</b></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175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pp.177~178	22번 23번 24번 25번 해설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2번 23번 24번 25번 해설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177	24번 보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다	24번 보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다
p.182	34번 보기 4) 지방재정법 해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34번 보기 4) 지방회계법 해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p.183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음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음
p.189	44번 보기 1)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해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44번 보기 1)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해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Page	수정 전	수정 후
p.190	표 하단 (공중보건역사의 신분 : 계약직 공무원)	표 하단 (공중보건역사의 신분 : 임기제 공무원)
p.193	50번 해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②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 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50번 해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②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 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p.194	51번 보기 2) 보건소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51번 보기 2) 보건소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 해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p.196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p.204	제2조 정의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 기관 등 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제2조 정의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 기관 등 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04	<p>제2조 규칙 제2조 응급증상</p> <p>외과적 응급증상</p> <p>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등</p>	<p>제2조 규칙 제2조 응급증상</p> <p>외과적 응급증상</p> <p>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등</p>
p.212	<p>20번 보기</p> <p>4) 응급의료정보센터</p> <p>해설</p> <p>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b>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b>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20번 보기</p> <p>4) 응급의료지원센터</p> <p>해설</p> <p>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b>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b>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213	<p>23번 보기</p> <p>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이송 받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해설</p> <p>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p>	<p>23번 보기</p> <p>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이송 받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해설</p> <p>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p>

Page	수정 전	수정 후
	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b>응급의료정보센터</b> (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b>응급의료지원센터</b>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p.215	제11조 규칙 제4조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① <b>응급의료정보센터</b> 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	제11조 규칙 제4조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① <b>응급의료지원센터</b> 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
p.221	34번 보기 1) <b>응급환자</b> 의 진료 해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b>응급의료 지원</b>	34번 보기 1) <b>중증응급환자</b> 의 진료 해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5번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b>응급의료정보센터</b> 의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b>응급의료정보센터</b> 의 업무	35번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b>응급의료지원센터</b> 의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b>응급의료지원센터</b> 의 업무
p.222	36번 보기 4) <b>독극물중독센터</b> 해설 규칙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별표6 화상센터, 심혈관센터, <b>독극물중독센터</b> , 소아센터	36번 보기 4) <b>독극물센터</b> 해설 규칙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별표6 화상센터, 심혈관센터, <b>독극물센터</b> , 소아센터
	37번 문제 응급의료법에 의한 <b>응급의료정보센터</b> 의 업무로 맞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4조( <b>정보센터</b> 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37번 문제 응급의료법에 의한 <b>응급의료지원센터</b> 의 업무로 맞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4조( <b>응급의료지원센터</b> 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p.223	41번 보기 5) <b>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b> 등을 감안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41번 보기 5) <b>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b> 등을 감안하여 전담의가 입원 의뢰한 응급환자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24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지원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의 응급의료지원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
p.225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 1. 응급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p.226	44번 해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4번 해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p.227	45번 해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5번 해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7번 보기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7번 보기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8번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48번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38	<p>16번 보기</p> <p>5)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b>병원체를 말한다</b></p>	<p>16번 보기</p> <p>5)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del>병원체를</del> <b>말한다</b></p>																																																										
p.239	<p>19번 해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p> <p>12.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p> <p>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p>	<p>19번 해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p> <p>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p> <p>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p> <p>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p> <p>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p> <p>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p> <p>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p>																																																										
p.24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f7fa;">제3군감염병</th> </tr> </thead> <tbody> <tr> <td>말라리아</td> <td>렙토스피라증</td> </tr> <tr> <td><b>결핵</b></td> <td>브루셀라증</td> </tr> <tr> <td>한센병</td> <td>탄저</td> </tr> <tr> <td>성홍열</td> <td>공수병</td> </tr> <tr> <td>수막구균성수막염</td> <td>신증후군출혈열</td> </tr> <tr> <td>레지오넬라증</td> <td>인플루엔자</td> </tr> <tr> <td>비브리오 패혈증</td> <td>후천성면역결핍증</td> </tr> <tr> <td>발진티푸스</td> <td>매독</td> </tr> <tr> <td>발진열</td> <td>크로이츠펠트</td> </tr> <tr> <td>쯔쯔가무시증</td> <td>-야콥병</td> </tr> <tr> <td></td> <td>변종크로이츠펠트</td> </tr> <tr> <td></td> <td>-야콥병</td> </tr> </tbody> </table>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b>결핵</b>	브루셀라증	한센병	탄저	성홍열	공수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열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비브리오 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발진티푸스	매독	발진열	크로이츠펠트	쯔쯔가무시증	-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f7fa;">제3군감염병</th> </tr> </thead> <tbody> <tr> <td>말라리아</td> <td>렙토스피라증</td> </tr> <tr> <td><b>결핵</b></td> <td>브루셀라증</td> </tr> <tr> <td>한센병</td> <td>탄저</td> </tr> <tr> <td>성홍열</td> <td>공수병</td> </tr> <tr> <td>수막구균성수막염</td> <td>신증후군출혈열</td> </tr> <tr> <td>레지오넬라증</td> <td>인플루엔자</td> </tr> <tr> <td>비브리오 패혈증</td> <td>후천성면역결핍증</td> </tr> <tr> <td>발진티푸스</td> <td>매독</td> </tr> <tr> <td>발진열</td> <td>크로이츠펠트</td> </tr> <tr> <td>쯔쯔가무시증</td> <td>-야콥병(CJD)</td> </tr> <tr> <td></td> <td>변종크로이츠펠트</td> </tr> <tr> <td></td> <td>-야콥병(vCJD)</td> </tr> <tr> <td></td> <td><b>C형 간염</b></td> </tr> <tr> <td></td> <td>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td> </tr> <tr> <td></td> <td>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td> </tr> </tbody> </table>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b>결핵</b>	브루셀라증	한센병	탄저	성홍열	공수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열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비브리오 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발진티푸스	매독	발진열	크로이츠펠트	쯔쯔가무시증	-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b>C형 간염</b>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b>결핵</b>	브루셀라증																																																											
한센병	탄저																																																											
성홍열	공수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열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비브리오 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발진티푸스	매독																																																											
발진열	크로이츠펠트																																																											
쯔쯔가무시증	-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b>결핵</b>	브루셀라증																																																											
한센병	탄저																																																											
성홍열	공수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열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비브리오 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발진티푸스	매독																																																											
발진열	크로이츠펠트																																																											
쯔쯔가무시증	-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b>C형 간염</b>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47	28번 보기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28번 보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p.248	제17조 감염병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제17조 감염병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p.252	32번 33번 해설 제24조(정기예방접종)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32번 33번 해설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밑줄 삭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p.253	제24조 정기예방접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디프테리아</td> <td>B형 간염</td> <td>b형헤모필루스</td> </tr> <tr> <td>폴리오</td> <td>유행성이하</td> <td>인플루엔자</td> </tr> <tr> <td>백일해</td> <td>선염</td> <td>폐렴구균</td> </tr> <tr> <td>홍역</td> <td>풍진</td> <td></td> </tr> <tr> <td>파상풍</td> <td>수두</td> <td></td> </tr> <tr> <td>결핵</td> <td>일본뇌염</td> <td></td> </tr> </table>	디프테리아	B형 간염	b형헤모필루스	폴리오	유행성이하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염	폐렴구균	홍역	풍진		파상풍	수두		결핵	일본뇌염		제24조 정기예방접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디프테리아</td> <td>B형 간염</td> <td>b형헤모필루스</td> </tr> <tr> <td>폴리오</td> <td>유행성이하</td> <td>인플루엔자</td> </tr> <tr> <td>백일해</td> <td>선염</td> <td>폐렴구균</td> </tr> <tr> <td>홍역</td> <td>풍진</td> <td>인플루엔자</td> </tr> <tr> <td>파상풍</td> <td>수두</td> <td></td> </tr> <tr> <td>결핵</td> <td>일본뇌염</td> <td></td> </tr> </table>	디프테리아	B형 간염	b형헤모필루스	폴리오	유행성이하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염	폐렴구균	홍역	풍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수두		결핵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B형 간염	b형헤모필루스																																				
폴리오	유행성이하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염	폐렴구균																																				
홍역	풍진																																					
파상풍	수두																																					
결핵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B형 간염	b형헤모필루스																																				
폴리오	유행성이하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염	폐렴구균																																				
홍역	풍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수두																																					
결핵	일본뇌염																																					
p.254	제27조 예방접종 증명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신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음	제27조 예방접종 증명서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신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음																																				
p.256	39번 해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번 해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60	<p><b>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b></p> <p>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b>의료업자나</b>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p>	<p><b>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b></p> <p>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b>의료인·의료업자</b>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p>
p.261	<p><b>제50조 그 밖의 예방조치</b></p> <p>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함</p>	<p><b>제50조 그 밖의 예방조치</b></p> <p>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치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p>
p.263	<p><b>제70조 손실보상</b></p> <p>① 손실보상 의무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p> <p>②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li> <li>2.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li> </ol> <p>③ 비용보상 :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 보상</p>	<p><b>제70조 손실보상</b></p> <p>① 손실보상 의무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p> <p>② 손실 보상의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li> <li>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li> <li>3.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li> <li>4.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격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li> <li>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li> </ol> <p>③ 심의·의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p> <p>④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함</p> <p>⑤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age	수정 전	수정 후
	제70조 손실보상의 범위 제70조 보상액의 산정 제70조 이의신청 제7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삭제</b>
p.269	<b>02번 해설</b> 제2조(정의)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b>02번 해설</b> 제2조(정의)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등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b>03번 해설</b>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b>03번 해설</b>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p.270	<b>04번 해설</b> 제2조(검역감염병의 종류)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b>04번 해설</b> 제2조(검역감염병의 종류)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등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70	<p>05번 해설 추가</p>	<p>05번 해설 시행규칙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p>
p.271	<p>제2조 정의</p> <p>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제2조 정의</p> <p>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등 호흡기 중후군(MERS)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274	<p>08번 보기</p> <p>1)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즉시 검역조사한다 2) 일몰 전 검역 장소로 들어온 선박은 반드시 다음날 일출 후 검역한다 3) 일몰 후 내항한 항공기는 반드시 일출 후 검역 4) 일몰 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환자 이송 후 즉시 5) 일몰 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하여야 할 경우 즉시</p>	<p>08번 보기</p> <p>1) 일출부터 일몰까지 <b>검역장소에 들어온 모든 운송 수단</b>은 즉시 검역조사한다 2) 일몰 전 검역 장소로 들어온 선박은 반드시 다음날 일출 후 검역한다 3) 일몰 후 내항한 항공기는 반드시 일출 후 <b>검역한다</b> 4) 일몰 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환자 이송 후 즉시 <b>검역한다</b> 5) 일몰 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하여야 할 경우 즉시 <b>검역한다</b></p>
p.276	<p>13~14번 해설 제15조(검역조치)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격리 2. <b>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b>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p>	<p>14~15번 해설 제15조(검역조치)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b>격리시키는 것</b> 2. <b>검역감염병 의심자</b>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p>

Page	수정 전	수정 후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 8. 예방접종을 하는 것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b>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b> 8. <b>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b> 예방접종을 하는 것
p.279	<b>제15조 검역조치</b> ①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격리시키는 것 2. <b>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b>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b>제15조 검역조치</b> ①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격리시키는 것 2. <b>검역감염병 의심자를</b>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p.280	<b>16번 해설</b>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b>⑥항 추가</b>	<b>16번 해설</b>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b>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b>
	<b>18번 해설</b>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등) 3. 자가 <b>4. 추가</b>	<b>18번 해설</b>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등) 3. 자가 <b>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b>
p.281	<b>19번 해설</b>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4. <b>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b>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6. 제2조제1호바목 및 <b>사목</b> 의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b>19번 해설</b>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4. <b>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b>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6. 제2조제1호바목 및 <b>아목</b> 의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b>20번 해설</b> 제17조(검역감염병 환자 감시) <b>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10일, 콜레라는 5일, 황열과 페스트는 6일의 최대 감시 또는 격리기간을 가진다.</b>	<b>20번 해설</b> 제17조(검역감염병 환자 감시) <b>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은 10일, 콜레라는 5일, 황열과 페스트는 6일의 최대 감시 또는 격리기간을 가진다.</b>
p.283	<b>제16조 검역감염병환자등의 격리</b> ② 격리시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	<b>제16조 검역감염병환자등의 격리</b> ② 격리시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

Page	수정 전	수정 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p.284	<b>제17조 검역감염병환자 감시</b> ③ 감시 또는 격리 기간(다음 초과 불가) 1. 콜레라 : 5일(120시간) 2. 페스트 : 6일(144시간) 3. 황열 : 6일(144시간)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6. 제2조제1호바목(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사목(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의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b>제17조 검역감염병환자 감시</b> ③ 감시 또는 격리 기간(다음 초과 불가) 1. 콜레라 : 5일(120시간) 2. 페스트 : 6일(144시간) 3. 황열 : 6일(144시간)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6. 제2조제1호바목 및 아목까지의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p.285	<b>제27조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b> ①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 → 검역소장은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 ④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 ⑤ 검역소장은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 ⑥ 검역소장은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b>제27조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b> ①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 → 검역소장은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증명서 혹은 면제증명서를 발급 ④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관한 <del>검사를 하고, 그 결과</del>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del>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del>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Page	수정 전	수정 후
	<p>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p> <p>⑦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p> <p>⑧ 검역소장은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조사를 해야 함</p> <p>⑨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p>	<p>㊸ 삭제</p> <p>㊹ 삭제</p>
p.286	<p>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국제예방접종 증명서&amp;세균 혈청학적 검사증명서</p> <p>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 <b>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가능(<b>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b>)</p> <p>3.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해제 : <b>질병관리본부장은</b>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 해제 가능</p>	<p>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국제예방접종 증명서&amp;세균 혈청학적 검사증명서</p> <p>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 <b>보건복지부장관은</b>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에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가능(<b>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b>)</p> <p>3.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해제 : <b>보건복지부장관은</b>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 해제 가능</p>
p.288	<p>24번 해설 추가</p>	<p>24번 해설 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검역소장은 군용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5번 해설</p> <p>시행규칙 제5조(검역 장소 등)</p> <p>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날씨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다는 사실</p> <p>2.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p> <p>25번 해설</p> <p>시행규칙 제5조(검역 장소 등)</p> <p>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289	<p>시행규칙 제8조 전자 검역 신청</p> <p>①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안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함</p>	<p>시행규칙 제8조 전자 검역 신청</p> <p>①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함</p>
p.293	<p>02번 해설</p> <p>제1조(목적)</p> <p>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02번 해설</p>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p> <p>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p> <p>3)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p>
p.294	<p>05번 해설</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p> <p>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05번 해설</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p> <p>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b>06번 해설</b>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b>의하여</b>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b>이외</b>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b>것</b>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06번 해설</b>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b>따라</b>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b>사항</b>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b>사항</b>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95	<p><b>09번 보기</b></p> <p>1) 감염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 2) <b>감염인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b>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4)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5)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p>	<p><b>09번 보기</b></p> <p>1) 감염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 2) <b>진단 결과로 인해 감염인이 확정된 경우</b>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4)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5)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p>
pp.295~296	<p><b>08번, 9번, 11번, 12번 해설</b>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b>관하여</b>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b>가능한 한</b>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p>	<p><b>08번, 9번, 11번, 12번 해설</b>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b>관계에 있는 사람</b>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b>가능하면</b>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97	<p>13번 해설</p> <p>시행규칙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3번 해설</p> <p>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300	<p>17~18번 해설</p> <p>제8조(검진)</p> <p>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li> <li>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사람은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p>	<p>17~18번 해설</p> <p>제8조(검진)</p> <p>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li> <li>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사람은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01	<p><b>19번 해설</b> 제8조(검진)</p>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91일 이상)는 입국 전 <b>1월</b>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b>제시하여야</b> 한다. 이를 <b>제시하지</b>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b>19번 해설</b> 제8조(검진)</p>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91일 이상)는 입국 전 <b>1개월</b>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b>보여주어야</b> 한다. 이를 <b>보여주지</b>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302	<p><b>22번 보기</b></p> <p>4) <b>시·도지사</b>는 전문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b>22번 보기</b></p> <p>4) <b>시장·군수·구청장</b>는 전문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303	<p><b>24번 해설</b>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p> <p>•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b>300만원</b> 이하 벌금</p>	<p><b>24번 해설</b>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p> <p>•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b>1천만원</b> 이하 벌금</p>
p.307	<p><b>26번 해설</b> 제18조(취업의 제한)</p> <p>①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300만원</b> 이하의 벌금).</p> <p>②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1,000만원</b> 이하의 벌금,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300만원</b> 이하의 벌금).</p>	<p><b>26번 해설</b> 제18조(취업의 제한)</p> <p>①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1천만원</b> 이하의 벌금).</p> <p>②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b>3천만원</b> 이하의 벌금,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1천만원</b> 이하의 벌금).</p>
p.315	<p><b>제2조 정의</b></p> <p><b>혈액원</b>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p>	<p><b>제2조 정의</b></p> <p><b>혈액원</b>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b>혈액제제 제조업자</b>)</p>
p.316	<p><b>06번 보기</b></p> <p>5) 바이러스</p>	<p><b>06번 보기</b></p> <p>5) 바이러스에 <b>의하여 감염되는 질병</b></p>
p.324	<p><b>17번 해설</b>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p> <p>⑥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b>정함</b></p>	<p><b>17번 해설</b>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p> <p>⑥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b>정한다</b>.</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28	<p>21번 보기</p> <p>3) <b>성병</b>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4) 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b>해설</b>  채혈금지대상자(시행규칙 제7조 관련)</p> <p>2. 질병관련 요인</p> <p>1)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사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p> <p>2) 일정기간 채혈금지대상자</p> <p>다. <b>성병</b>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라. 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21번 보기</p> <p>3) <b>매독</b>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4) <b>급성</b> 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b>해설</b>  채혈금지대상자(시행규칙 제7조 관련)</p> <p>2. 질병관련 요인</p> <p>1) <b>만성</b>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사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p> <p>2) 일정기간 채혈금지대상자</p> <p>다. <b>매독</b>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라. <b>급성</b> 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329	<p>24번 해설</p> <p>채혈금지대상자(시행규칙 제7조 관련)</p> <p><b>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b></p>	<p>24번 해설</p> <p>채혈금지대상자(시행규칙 제7조 관련)</p> <p><b>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b></p>
p.330	<p>시행규칙 제7조</p> <p>가. 감염병</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b>혈액매개 감염병 환자</b>,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p> <p>2) 일정기간 채혈금지대상자</p> <p>가) <b>말라리아</b> 병력자로 <b>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다) <b>성병</b> 병력자로 <b>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라) <b>B형 간염</b> 병력자로 <b>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b>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b></p>	<p>시행규칙 제7조</p> <p>가. 감염병</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b>혈액매개 감염병 환자</b>,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p> <p>2) 일정기간 채혈금지대상자</p> <p>가) <b>말라리아</b> 병력자로 <b>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다) <b>매독</b> 병력자로 <b>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라) <b>급성 B형 간염</b> 병력자로 <b>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p> <p>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b>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b></p>
p.344	<p>06번 보기</p> <p>1)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p>	<p>06번 보기</p> <p>1)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할 수 <b>도</b> 있다</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45	<p>07번 해설</p> <p>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li> <li>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li> <li>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li> <li>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li> <li>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07번 해설</p> <p>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li> <li>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li> <li>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li> <li>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li> <li>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li> <li>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346	<p>제3조 정의</p> <p>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p>	<p>제3조 정의</p> <p>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p>
p.347	<p>제4조 심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급여의 기준</li> <li>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li> <li>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li> <li>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li> <li>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제4조 심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요양급여의 기준</li> <li>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li> <li>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li> <li>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li> <li>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348	<p>08번 해설</p> <p>제5조(적용 대상 등)</p> <p>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p>	<p>08번 해설</p> <p>제5조(적용 대상 등)</p> <p>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p> <p>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p> <p>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p>
p.349	<p>11번 해설</p> <p>제6조(가입자의 종류)</p> <p>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p>	<p>11번 해설</p> <p>제6조(가입자의 종류)</p> <p>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b>군간부</b>후보생</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49	<p>12번 해설</p> <p>제8조</p> <p>제8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p>	<p>12번 해설</p> <p>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p> <p>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li> <li>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li> <li>3.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li> <li>4. 제5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li> </ol>					
p.351	<p>제6조 가입자의 종류 직장</p> <p>② 적용 제외되는 자</p> <p>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p>	<p>제6조 가입자의 종류 직장</p> <p>② 적용 제외되는 자</p> <p>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b>군간부</b>후보생</p>					
p.352	<p>제6조 가입자의 종류 피부양자</p> <p>다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b>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b></p> <table border="1" data-bbox="361 1129 758 1220"> <tr> <td>제6조</td> <td>적용대상</td> <td>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td> </tr> </table>	제6조	적용대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p>제6조 가입자의 종류 피부양자</p> <p>다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b>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b></p> <table border="1" data-bbox="834 1129 1151 1220"> <tr> <td>시행규칙 제2조</td> <td>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td> </tr> </table>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제6조	적용대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p.353	<p>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p> <p>② 신고의무 :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각각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li> <li>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li> </ol> <p>③ 통지의무 : <b>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b>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전환 복</p>	<p>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p> <p>② 신고의무 :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각각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el>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del></li> <li>2. <del>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del></li> </ol> <p>③ 통지의무 : <b>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b>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전환 복</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및 교도소 등의 수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b>1월</b>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지</p>	<p>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및 교도소 등의 수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b>1개월</b>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지</p>
p.355	<p><b>17번 해설</b> 제14조(업무 등)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b>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b>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b>3)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b></p>	<p><b>17번 해설</b> 제14조(업무 등)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b>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b>3)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b></p>
p.356	<p><b>제14조 업무</b>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b>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b></p>	<p><b>제14조 업무</b>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b>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p>
p.358	<p><b>21번 해설</b> 시행령 제19조 별표 2(본인 부담 요양급여 비용)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 <b>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b></p>	<p><b>21번 해설</b> 시행령 제19조 별표 2(본인 부담 요양급여 비용)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b>치료재료</b>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b>일반환자</b> : <b>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b></p>
p.360	<p><b>27번 해설</b>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p>	<p><b>27번 해설</b>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p>
p.361	<p><b>29번 해설</b> 제53조(급여제한) <b>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 보기 1번에서 4번까지와 동일하다.</b></p>	<p><b>29번 해설</b> 제53조(급여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p> <p>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p>																								
p.362	<p>32번 해설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p> <p>2. 암검진 : <b>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b></p> <p>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b>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b></p>	<p>32번 해설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p> <p>2. 암검진 : 「<b>암관리법 시행령</b>」 별표 1의 <b>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b></p> <p>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b>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b></p>																								
p.364	<p>시행령 제19조 별표2</p> <table border="1" data-bbox="361 990 805 1652"> <thead> <tr> <th>기관종별</th> <th>소재지</th> <th>환자 구분</th> <th>본인부담액</th> </tr> </thead> <tbody> <tr> <td>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td> <td>모든 지역</td> <td></td> <td>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td> <td>모든 지역</td> <td></td> <td>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body> </table>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p>시행령 제19조 별표2</p> <table border="1" data-bbox="834 990 1278 1721"> <thead> <tr> <th>기관종별</th> <th>소재지</th> <th>환자 구분</th> <th>본인부담액</th> </tr> </thead> <tbody> <tr> <td>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td> <td>모든 지역</td> <td><b>일반 환자</b></td> <td>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td> </tr> <tr> <td>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td> <td>모든 지역</td> <td></td> <td>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td> </tr> </tbody> </table>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b>일반 환자</b>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 )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b>일반 환자</b>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x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b>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함</b> )																							

Page	수정 전	수정 후
p.366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70만원	시행령 제253조 부가급여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90만원
p.366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b>암검진</b>    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5대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div>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함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b>암검진</b>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5대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div>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함
p.368	제54조 급여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현역병, 전환복무자, <b>무관</b> 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54조 급여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현역병, 전환복무자, <b>군간부</b> 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p.372	37번 보기 5)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3 세대단위로 산정한다	37번 보기 5)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원을 단위로 산정한다
p.379	44번 해설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44번 해설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b>및 가산금</b> 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b>및 가산금</b> 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p.380	46번 해설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46번 해설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b>또는 제3호</b> 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

Page	수정 전	수정 후
	<p>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381	<p><b>제91조 시효</b></p> <p>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li> <li>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li> </ol>	<p><b>제91조 시효</b></p> <p>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li> <li>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li> </ol>
p.383	<p><b>제99조 과징금</b></p> <p>④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세자의 인적사항</li> <li>2. 사용 목적</li> <li>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li> </ol>	<p><b>제99조 과징금</b></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⑥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li> <li>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li> </ol> <p>⑦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예에 따라 징수</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세자의 인적사항</li> <li>2. 사용 목적</li> <li>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li> </ol> <p>⑦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li> <li>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li> </ol> <p>⑧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388	<p><b>04번 해설</b> 제2조(정의) 가.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b>04번 해설</b> 제2조(정의) 가.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라테아툼 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392	<p><b>제2조 마약</b> ①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1. 양귀비 :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3. 코카 잎 :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 제외) ②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위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b>제2조 마약</b> ①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1. 양귀비 :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파파베르 브라테아툼 3. 코카 잎[엽] :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 제외) ②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위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400	<p><b>제6조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b></p> <p>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약류수출입업자 :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li> <li>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li> <li>3. 마약류도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li> <li>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li> <li>5. 대마재배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li> </ol>	<p><b>제6조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b></p> <p>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b>자로서 총리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b>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b>마약류도매업자</b>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b>대마재배자</b>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p>
p.401	<p><b>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b></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청(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허가</p>	<p><b>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b></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목마다 허가를 받을 것(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li> <li>2.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을 것(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허가</li> </ol>
p.405	<p><b>26번 해설</b></p> <p>제11조(기록의 정비)</p> <p>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b>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b>(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p>	<p><b>26번 해설</b></p> <p>제11조(기록의 정비)</p> <p>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b>마약류취급승인자</b>(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408	<p>제11조 기록의 정비</p> <p>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p> <p>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p>	<p>제11조 기록의 정비</p> <p>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p> <p>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다만, 마약류소매업자</p>

Page	수정 전	수정 후
	<p>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p>	<p>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 생략 가능</p>
p.413	<p><b>36번 해설</b>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p>	<p><b>36번 해설</b>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b>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b>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b>예고임시마약류 또는</b>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p>
	<p><b>37번 해설</b>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b>37번 해설</b>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419	<p><b>제42조 폐기 명령 등</b>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마약류로 보고된 마약류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음</p>	<p><b>제42조 폐기 명령 등</b>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마약류로 보고된 마약류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b>및 마약류취급승인자</b>에게 명할 수 있음</p>